

일하는 엄마·아빠를 위한 **출산·육아지원제도** 고용노동부가 지원합니다

▶ 근로자 지원 ◀

1.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구분	지원요건 등
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	① 육아휴직(육아기 단축)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
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	① 육아휴직(육아기단축)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② 육아휴직(육아기단축)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③ 육아휴직(육아기단축)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2. 출산전후휴가

- (지원대상)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
- (지원내용)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매월 통상임금의 100%(상한액 월210만원)

구분	최초 60일(다태아 75일)	마지막 30일(다태아 45일)
우선지원 대상기업	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고,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	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(최대 210만원)
대규모 기업	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	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(최대 210만원)

3. 배우자 출산휴가

- (지원대상)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
- (지원내용)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원(상한액 401,910원)

▶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지원 ◀

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

◆ 지원내용

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,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

◆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- ▶ (육아휴직 지원금)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

자녀연령		연간총액	1개월 지급액
육아휴직	만 12개월이내*	870만원	▲ 첫 3개월 200만원 ▲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
	만 12개월 초과	360만원	30만원

* 만 12개월 이내 자녀(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) 대상 연속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 시 적용

- ▶ 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)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

구분	1개월 지급액	연간 총액
기본	30만원	360만원
인센티브*적용	40만원	480만원

*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

- ▶ (대체인력 지원금)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 (인수인계기간은 월120만원) 지원

◆ 신청방법

- ▶ (온라인 신청) 고용24(www.work24.go.kr)-기업로그인-고용안정장려금 신청
- ▶ (오프라인 신청) 우편 또는 방문(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 평택고용센터 기업지원팀)
- ▶ 기타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0